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774

발의연월일: 2020. 11. 26.

발 의 자: 주철현·민형배·조오섭

박용진 · 송재호 · 안규백

위성곤 • 윤준병 • 이해식

고용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업법」에 따르면 정치망어업은 면허어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漁具)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으로서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어업인 정치성 구획어업과 매우 유사한 어업임.

그런데 현행법상 연근해어업의 범위에 허가어업인 구획어업은 포함 되어 있으나 면허어업인 정치망어업은 제외되어 어업구조개선 대상에 서도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근래 어족자원보호 등을 위하여 어업별, 어종별 금어기가 새로 설정되고 어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연안에 설치되는 정치망어업의여건이 급속하게 악화되면서 계속 어업활동을 영위하기보다는 포기를원하는 정치망 어업인들이 증가하고 있어, 정치망어업을 감척대상사업에 포함시켜 선택의 폭을 넓혀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연근해어업의 정의에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정 치망어업을 추가함으로써, 정치망어업이 어업구조개선사업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조·제6조·제 7조·제9조·제10조 및 제1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철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60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을 말한다"를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정치망어업과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을 말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을 "연안어업·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으로 한다.

제6조제1항 후단 중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을 "연안어업·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으로 한다.

제7조제1항 후단 중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을 "연안어업·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을 "연안어업 · 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을 "연안어업 · 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전단 중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을 "연안어업 · 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근해어업"이란 「수산업 1. ------「수산업 법」 제41조에 따른 근해어 법」 제8조에 따른 정치망어 업과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을 말한다.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 업을 말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4조(어업실태조사) ① 해양수산 | 제4조(어업실태조사) ① ----부장관과 광역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 지사"라 한다)는 어업구조개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 항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어 업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해어업에 대하 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안어 업과 구획어업에 대하여는 시 업ㆍ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 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 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구청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어업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 1. ~ 3. (생 략)
- ② ~ ④ (생 략)

제6조(어선・어구 감척시행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과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어선·어구의 감척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감척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도 력하여야한다.이경우근해어업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연안어업과 구획어업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감척시행계획을 세워야한다.

② ~ ⑧ (생 략)

제7조(어업선진화시행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어업선진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선진화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이 경우 근해어업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안어

| | _ |
|------------------------------------|-----------|
| 1. ~ 3. (현행과 같음) | |
| 1. ~ 3. (년생각 설름) ② ~ ④ (현행과 같음) | |
| 제6조(어선·어구 감척시행계획 | 틱 |
| 의 수립) ① | |
| | _ |
| | _ |
| | _ |
| | _ |
| | _ |
| | _ |
| | _ |
| - <u>연안어업·구획어업 및 정치</u> | <u>:]</u> |
| <u>망어업</u> | _ |
| | • |
|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7조(어업선진화시행계획의 ~ | <u>.</u> |
| 제7도(의급전전화기 3개복기 의 립) ① | _ |
| 日/ ① | _ |
| | _ |
| | |
| | _ |
| | _ |
| | _ |
| | |

업과 구획어업에 대하여는 시
·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
장의 의견을 들어 선진화시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③ (생 략)

제9조(감척 대상 어업의 자율신 7청) ① 제8조에 따라 고지를 받은 어업자단체등은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어선 어구 감척 계획서를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 ②・③ (생략)
- 제10조(감척 대상 어업의 직권지 저정) ① (생 략)
 -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 지사가 직권으로 감척 대상 어 업을 지정하려면 어선·어구 감척 계획서를 작성하여 근해 어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 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

| 업·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 |
|-------------------------------------|
|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
| 제9조(감척 대상 어업의 자율신 |
| 청) ① |
| |
| |
| |
| |
| |
| <u>연안어업·구획어업 및</u> |
| <u>정치망어업</u> |
| |
| 1. ~ 3. (현행과 같음)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감척 대상 어업의 직권지 |
| 제10소(삼작 대형 이급의 작년시 정) ① (현행과 같음) |
| ② |
| |
| |
| |
| |
| 연안어업 • 구획어업 및 정치망 |
| 어업 |

의하고, 해당 어업자단체등의 의견을 들은 후 해당 수산조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 ④ (생 략)

- 제11조(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전정) ①·② (생 략)
 - ③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④·⑤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레11조(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③・④ (현행과 같음) 레11조(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③・④ (현행과 같음) 레11조(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세11조(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선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③연안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 | |
| <u>연안어업</u> <u>연안어업</u> •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 | 선정) ①・② (현행과 같음) |
| ·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 | ③ |
| ·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 | |
| | <u>연안어업</u> |
| | •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⑤ (현행과 같음) | · (A) (A) 해고 가으 |